

2021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방법 변경 공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등록과 관련한 안내사항 중 등록방법 등을 변경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5일

소방청장

< 변경내용 및 사유 >

소방청 공고 제2020-188호 「2021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고」 내용 중 등록방법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기간 등은 해당 등록기간을 따르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시험과목) 및 [별표 6] ('20. 6. 30. 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및 별표6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6]의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제출한 시험성적이 영어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을 지나 제출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추진배경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의 경우,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성적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이 있습니다.

-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보유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등록대상

-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자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는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 사전등록 불필요

4. 등록일정 및 방법

- 토플의 경우

※ '22년 등록일정은 2021년 12월 중 공지 예정

연번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확인/수정	등록방법
1	'21. 07. 01. ~ '21. 07. 10.	'19. 08. 01. 이후 실시된 시험	매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2	'21. 08. 01. ~ '21. 08. 10.	'19. 09. 01. 이후 실시된 시험	"	
3	'21. 09. 01. ~ '21. 09. 10.	'19. 10. 01. 이후 실시된 시험	"	
4	'21. 10. 01. ~ '21. 10. 10.	'19. 11. 01. 이후 실시된 시험	"	
5	'21. 11. 01. ~ '21. 11. 10.	'19. 12. 01. 이후 실시된 시험	"	
6	'21. 12. 01. ~ '21. 12. 10.	'20. 01. 01. 이후 실시된 시험	"	

- 토플을 제외한 시험의 경우 : 연중 실시하며 등록방법은 토플과 동일합니다. (단, 시행사별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유의사항

- 본 안내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 적용 7일 전까지 소방청(<http://www.nfa.go.kr>) 및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중 해당 능력검정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성적을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사전 등록된 자료도 인정됩니다.
- 기존 소방청에 등록된 자료도 인정됩니다.

붙임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1부.

<붙임>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